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52489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김윤석, 조경윤, 강영태, 김교문, 김민식, 양어진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현, 정현미, 강민주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122,000,000원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의 2020. 7. 13.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D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78,000,000원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C 사이의 2020. 7. 13.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D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과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8. 23. 보증번호 F, 보증원금 285,000,000원, 보증기한 2013. 8. 23.(차후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이 256,500,000원과 2020. 8. 7.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90%)를 발급해 주어, E이 2012. 8. 13. G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이하 '제1보증건'), 2013. 12. 17. 보증번호 H, 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17.(차후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이 153,000,000원과 2020. 12. 11.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 주어, E이 2013. 12. 17. I은행(구 J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이하 '제2보증건'), 2014. 8. 13. 보증번호 K, 보증원금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5. 8. 12.(차후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이 242,250,000원과 2020. 8. 7.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 주어, E이 2014. 8. 1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이하 '제3보증건')을 하였다. 원고와 E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E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20.

6. 1. 이후 연 8%)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고, E이 압류 · 가압류 · 가처분을 당하거나,

회생절차 · 파산절차 등의 신청이 있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당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E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없이 채권자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2) C은 제1, 2, 3보증건에 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E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기한을 연속적으로 연장하여 오다가, 2020. 3. 2., 2020. 5. 11.,

2020. 6. 11. 각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대출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667,866,3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가) 2020. 9. 1. 중소기업은행에게 250,515,384원(제3보증건)나) 2020. 9. 4. I은행에게

156,926,614원(제2보증건)

다) 2020. 9. 11. G은행에게 260,424,308원(제1보증건)

4) 원고는 C에게 667,866,306원 및 그 중 250,515,384원에 대하여는 2020. 9. 2.부터,

156,926,614원에 대하여는 2020. 9. 5.부터, 260,424,308원에 대하여는 2020. 9. 1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C의 무자력 초래

1) 처분행위

E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들에 대하여 2020. 3. 2., 2020. 5. 11., 2020. 6. 11. 각

이자연체로 대출사고처리되자, E의 전 대표자(사내이사, 2017. 9. 5. 사임)이자 감사(2019. 4. 15. 취임)로서 연대보증인인 C은 2020. 7. 13. 자신의 가치있는 유일한 재산(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은 그 가액과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 부담금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치가 남아있지 않다)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중 122,000,000원을 피고 A에게, 78,000,000원을 피고 B에게 각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D에게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C의 자력

가) 적극재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및 광주시 L 임야 227㎡, M 도로 61㎡, N 도로 30㎡, O 도로 1㎡, P 도로 99㎡, Q 도로 134㎡, R 도로 89㎡, S 도로 66㎡, T 도로 139㎡, U 도로 1㎡(위 U 도로 1㎡를 제외한 9필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V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이하 통칭하여 ‘경매처리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C의 재산이고, 그 가액은 583,238,000원[이 사건 채권 200,000,000원 + 경매처리 부동산 383,238,000원(위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이다.

다) 소극재산

(1) 원고에 대한 667,866,306원 상당의 구상금채무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V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주요 채무{위 경매사건에서는 2021. 8. 23. ‘최저매각가격 금 383,238,000원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2,967,268,927원(근저당권, 조세 등)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취지가 통지되었다.}

① W 주식회사에 대한 2,203,000,000원 상당의 채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V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채권자)

② X조합에 대한 2,106,041,803원 상당의 채무(경매처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3) 피고들에 대한 채무

① 피고 A에 대한 126,000,000원 상당의 채무

② 피고 B에 대한 78,000,000원 상당의 채무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의 C이 이 사건 채권 양도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①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의 채권발생 이전에 이루어졌다.

② 피고 A은 C에게 2019. 4. 30.부터 2020. 6. 1.까지 1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60,000,000원을 변제받고 12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 B은 C에게 2016. 10. 31.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22,000,000원을 변제받고 78,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채권 양도는 위 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채무변제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7648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 양도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 연대보증약정이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E이 대출금 변제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을 C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I, 같은 이유로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 채무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이 피고들에게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

라. 피고들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E,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채무자의 제3자에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C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임대차보증금까지 채권자들에게 양도할 정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충분히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C의 이 사건 채권 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별지

채 권 목 록

C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서초구 Y아파트 Z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2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끝.

